의 안 번 호

1479

## [한국지방세연구원 2019년 출연금 동의의 건]

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검토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8. 10. 5.(금)

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8. 10. 10.(수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8. 10. 19.(금)

##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제3항에 따라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#### 3. 주요내용

가. 출연기관 : 한국지방세연구원

나. 사업내용

○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 지급

다. 출 연 금 : 5,563천원

라. 산출기준 :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5

○ 2017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37,089,548천원 × 1.5 / 10,000

#### 4. 근거법규

가.「지방세기본법」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

나.「지방재정법」제18조

#### 5. 검토의견

- O 본 출연금 동의의 건은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에 따라 2019년도 일 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,
- 「지방세기본법」제15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 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,
- O 해당 금액을 같은 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"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"라고 규정하고 있어,
- O 본 동의의 건은 상위법령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써 우리구의 출연 및 출연 금액이 적정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